

- 2007년도 피해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-  
**'화재피해지원 센터 운영' 계획**



이 용 숙 >>

소방방재청 화재조사팀 화공담당

## 1. 서 론

화재피해주민들의 아픔을 같이하며, 조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화재현장에서 절망감에 몸부림치는 피해주민들을 접하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각종 행정기관, 구호단체 등에서 운영중인 “화재피해주민지원제도”가 의외로 많이 있으나 홍보 부족 또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았다.

화재시 최초로 피해주민들과 접촉하는 소방관서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복구 및 구호,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「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」를 설치하여 화재로

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 33,117건의 피해자 중 화재 보험에 가입한 8,100건(24%) 만이 피해를 보전할 수 있었고,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민들은 피해보전 방법이 없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음. 화재로 인한 혀탈함과 당혹감에 상심하고, 의식주 문제와 피해 복구 등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찾지 못해 절망에 빠진 화재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안내하여 생활기반을 재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임.

## 2.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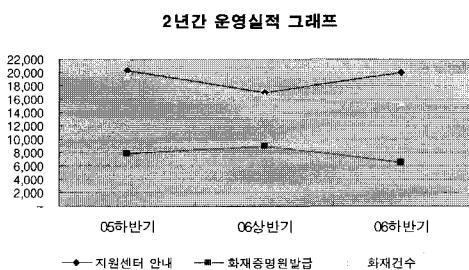


표 1. 지원센터 운영실적(2년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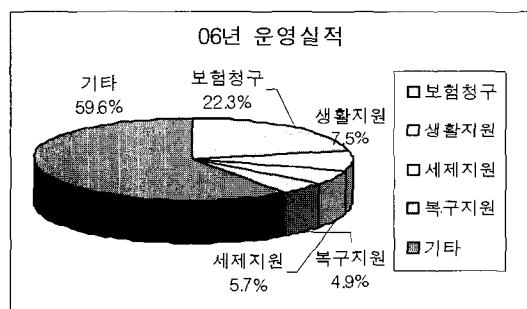
구 분	'05년 하반기	'06년 상반기	'07년 하반기
지원센터 안내실적	20,277	17,053	20,049
화재증명원 발급	7,880	8,968	6,449
화재 건수	19,481	16,436	15,342

표 2. 화재발생 총괄 현황

연도별	구분	발생건수	인명피해(명)			재산피해 (백만원)
			계	사망	부상	
2006년		31,778	2,180	446	1,734	150,792
2005년		32,340	2,342	505	1,837	171,374
대비	증감	△562	△162	△59	△103	△20,582
	%	△1.7	△6.9	△11.7	△5.6	△12.0

#### □ 분야별 운영실적

찾아나서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안내 운영실적



- 분석기간 : '06.1.1 ~ 12.31(1년)
- 화재발생건수 : 31,778건
- 지원센터 운영성과

- 화재피해지원안내 : 37,102건(116.7%)
- 경제적 수혜건수 : 22,241건(69.9%)
- 화재관련 정보제공에 따른 보험청구 : 8373건 (22.5%)
- 화재보험 청구(8,276건),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청구(97건)
- 구호물(금)품 지급, 임시주거시설 마련 알선에 따른 생활지원 : 3,368건(9.1%)
- 납세연장 등 국세·지방세 안내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 : 2,577건(6.9%)
- 자원봉사자, 소방차량 등을 활용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: 2,187건(5.9%)
- 기타 지원활동 : 2,503건(6.7%)



그림 1. 거창군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



그림 2. 김해소방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

- 2007년도 피해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-  
『화재피해지원 센터 운영』계획



그림 3. 화재피해복구지원 상담



그림 4. 재해구호품을 직접 전달하는 장면

### 3. '07년도 세부추진계획

#### 3.1 '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' 운영 내실화

##### 『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』상설 운영

- 장소 : 소방서 민원실
- 구성 : 소방서 지원센타팀 3명(팀장1, 팀원2)
  - ※ 법률지식 및 민원업무 처리절차에 능통한 자로 지정(겸직)
- 「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」민원처리 안내도 비치
  - 민원처리 안내도 및 지원서식 비치 : 화재증명원 등 26종(추가 E-아름다운기금 신청서) 고객만족 T/F팀과 고객만족 행정 연계 추진
- 화재 등 재난피해 이재민 재활복구 지원
- 고객만족의 민원업무절차 재설계, 고객관리 및 만족도 조사,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도모
- 119 신고전화와 연계를 통한 실시간 상담
  - 장애우 · 독거노인 · 문맹인 등 구호신청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After(상담에서 신청까지) 서비스 제공
- 해피콜 등 민원고객에 대한 사후관리(AS) 및 환류 강화
- 「화재피해 심리상담(PTSD)」전문가 육성
  - 각종 재난으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「화재피해

주민 지원센터』와 연계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(PTSD) 서비스센터 운영 체계 구축

- 화재진압 구조 · 구급대원의 재난현장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지지 프로그램 (PSP) 교육

#### 3.2 피해주민 지원내실화 및 영역 확대 추진

##### 3.2.1 피해주민이 경제적 곤경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손해보험회사의 가지급 보험금 지급 안내 · 지원

- 지역별 손해보험사와의 상시 연락 · 보험금 조기 지급 체계 구축 : 50% 선지급
-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의 대외 공신력 제고로 보험료 선지급 제도 확립
- ※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의 합리적개선 추진과 연계 추진 : '07. 3월 시행

##### 3.2.2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활, 의료 · 주거 서비스 등 지원

- 화재피해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 저소득자, 조손가정 등 "E-아름다운기금" 지원제도 안내
- 위기사유 발생 생계 곤란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안내
-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(금)품 지원, 건강보험 처리 등
- 자연, 농 · 어업 재해 등 발생시 구호비 지원 안내

- 공무원의 경우 재해부조금 수혜 안내, 의사상자 보호 신청
- 소년·소녀가장 등 이재민에 대한 사랑의 집짓기
- 직접적인 복구지원서비스 제공(주택청소, 쓰레기 제거 등)

### 3.2.3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국세·지방세제의 지원

- 국세지원 : 납세연장, 가산세의 감면 및 재해손실액 공제 등
- 지방세 지원 : 재산세,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, 납부기한연장 등

### 3.2.4 기타 화재·재난 관련 생활정보의 제공

- 화재보험,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피해자의 가지급 보험금 제도 및 책임보험 등 정보 안내
- “화폐”의 소실, 불에 탄 신분증 등에 대한 처리 안내 및 정보제공
- 화재와 관련한 민·형사상의 책임, PL법 관련 정보의 제공
- 농·어업, 재해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해구호비 지원 안내

※ 소상공인 재해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의연금 지원 안내(100만원)

## 3.3 피해지원의 통합성·효율성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

- 기관별 지원사항에 대한 시스템 정비 : 대한적십자사 등 11개 기관
- 보험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험금 가지급금 우선 지원 추진
  - 소방서의 화재피해 산정금액으로 보험사 인정 토록 가지급금 우선지급(50%)
- 지역 내 기업 및 민간자원봉사단체, 의용소방대 등과 네트워크 구축
  - 소년·소녀가장, 독거노인 등에 대한 자원봉사 적극 추진
- 지원센터와 민간자선단체 지원사업 연계 추진
  - 연계사업 : 「아름다운재단」의 「E-아름다운기

## 금·지원사업

- 지원대상 : 화재피해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 저소득자, 조손가정 등
- 지원내용 : 주택복구비, 의료비(최대 500만원), 주거안정비(최대 200만원) 지원
- 접수방법 : 지역 내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작성 FAX접수

### 3.3.1 지역 관련기관·단체간 상시 연락·업무협조 체제 확립

- 연락처, 서식 개정, 업무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up·date 및 보강
- 간담회, 연찬회 개최 등 상호 이해증진 및 지원방안 강구

### 3.3.2 위기사유 발생 생계 곤란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안내

- 지원대상 : 화재 피해자 등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계비, 의료·주거서비스 등
- 접수처 : 전국 시·군·구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(**☎129**)
  - 콜센터를 통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 자료는 긴급 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절차 처리과정을 콜센터 홈페이지에 입력
- 적용범위 : “위기상황”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
  - ①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
  -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
  -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
  -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
  -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

### 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

- 지급기준 : 1인(418,309원/월), 3인(939,849원/월)
- 지급내용 :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,170천원, 의료비 300만원(1개월간 지급)
- 적용근거 :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의거
  - 그 밖의 지원 : 동절기 연료비, 해산비, 장례비, 전기요금 등 지원

### 3.3.3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구호물품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

- 대한적십자사와 협의를 통해 One-Stop 구호물(금)품 지원체계 구축

읍·면·동→소방서→피해주민



소방서(읍·면·동 경유)→피해주민

- 소방서·파출소에서 재해구호요청서를 Fax로 대한적십자사 해당 지사에 신청 구호물품, 조의금 및 긴급 구호비 지급

대한적십자사(협조요청)



소방서, 파출소



구호물품 전달

### 3.3.4 손해보험사와 협의 화재피해자의 보험가입 정보 파악가능 정보망 구축

- 각 소방관서가 지역별 손해보험사와 협의 보험금 조기 지급 체계 구축
- 화재보험,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 등 정보 안내·지원

※ 시·도 별 손해보험사 연락처 파악 상시 정보망 구축

### 3.3.5 세무서·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국·지방세 신속한 세제지원 체계 구축

-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(업소)를 납세기

### 관에 통보 신속한 세제지원

#### - 지원 내용

- 국세지원(세무서) : 납세연장, 가산세의 감면, 재해손실액 공제 등
  - 지방세 지원(시·군·구 세무과) : 재산세,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 및 납부기한의 연장 등
- ※ 시·군·구별 관련기관 담당자 연락처 파악  
상시 정보망 구축

관련 민관 기관·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

#### (1) 지방 차원

- 로타리 클럽, 각 직능단체, 복지 후원회 조직, 개인 후원자, 지역기업 등

#### (2) 중앙 차원

- 대한적십자사, E-아름다운 재단, 각종 기업복지재단 등

### 3.4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운영환경 개선

#### 3.4.1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On-Line 지원센터 운영 환경 개선

##### (1) 지방 차원

- 인터넷, 홈페이지 베너 창 등을 활용 홍보 및 이용도극대화

- 유관기관과의 각종 홍보 이벤트 및 캠페인 실시

##### (2) 중앙 차원

-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시 지원센터 팝업(Pop-up)창 등을 설치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전용 홈페이지 설치

-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정책홍보 추진

- 국내 네이버 지식검색 및 정책 키워드를 활용한 정책홍보

- 미담 수범사례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지속화

## 4. 성공 및 장애요인 분석

### 4.1 성공요인

- 대안별 폭넓은 심층토론과 자문을 통한 지원영역 확대
-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독단적 정책입안 방지
- 민간의 전문성과 공무원의 현장경험을 조화시킨 시너지 효과
- 기초생활 문제에 대한 행정지원을 안내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
- 경제적으로 무기력한 피해주민에게 의식주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제공으로 신속하게 해결
- 피해주민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여 고객위주의 시스템 도입
- 피해주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항의 정확한 진단
- 지원센터를 운영할 일선 담당자의 이용 편리성 도모
- 제도개선 내용 및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
- 정책 시행 전 철저한 검증절차 이행 등으로 사전 준비 철저

### 4.2 장애요인의 극복

- 적극적 피해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인원·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업무량 부담 가중으로 직원들의 불만 증가
- 전국 운영담당자 워크샵 개최, 시·도 자체교육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내부 반감 완화 및 추진동력 확보

- 주민지원센터는 화재피해자와 구호·복구관련 관계기관과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나, 시행초기 업무침범에 대한 경계심 및 업무지침 등 제도적인 장애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음
- 화재피해주민이 각 기관을 찾아가 신청할 경우 장시간이 소요됨으로 화재시 피해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소방서에서 일괄처리를 하는 것이 최단 시간내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여 합의를 도출하였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→ 피해주민을 진정으로 위한 것이다. 고객만족 행정의 긴요성 강조·설득

## 5. 달라진 지원체계의 비교

분산지원 → 전담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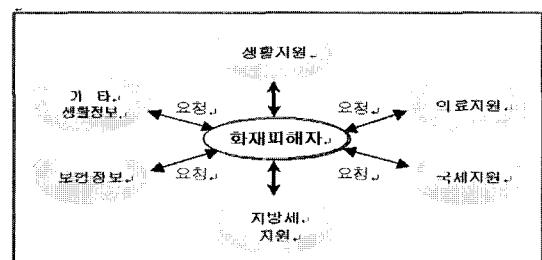


그림 5. 기존의 피해주민지원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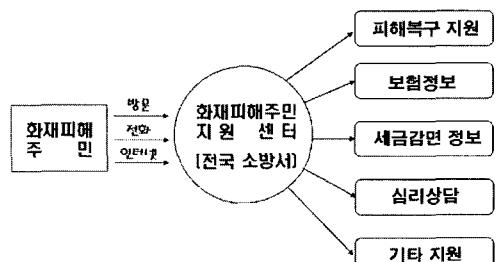


그림 6. 개선된 피해주민지원 흐름도

표 3. 지원센터 운영 성과

구 분	혁신 전	혁신 후	효 과
구호물품 지급단계	4단계	2단계	구호요청 단계축소 (센터에서 직접 지급요청)
구호물품 지급기간	5일	2일	9개월간 383일 단축
화재증명 원 발급	관할 소방서 에서만	가까운 소방서에서	민원인 편리 증대
지원 Network	미구축	유관기관(11) Network 구축	One stop Service 실현
보험금 우선 지급	미지급	50% 우선지급	신속한 생활안정 기억

표 4. 유관기관·단체별 화재 등 재난피해 지원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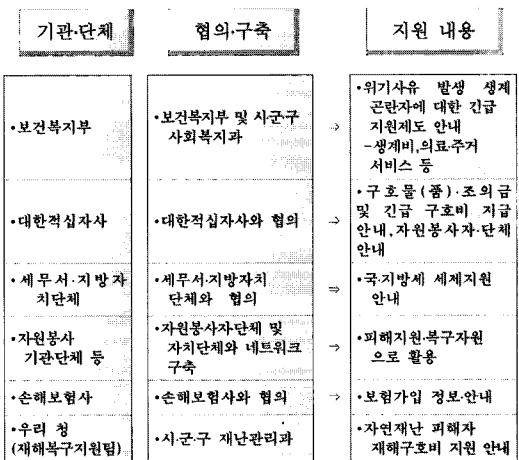


표 5. 관련 법령·규정

내 용	법령·규정
화재증명원 발급	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
구호물품 등 생활지원	대한적십자사 정관 제45조
의료 지원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
공무원의 재해부조금	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6조
의사상자의 보호	의사상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	국제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
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2조, 제23조	
소득세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118조, 시행규칙 제61조	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, 시행령 제20조	
보험관련	화재보험법 보통약관
가스사고 피해자와 책임보험	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, 시행령 제22조
생계곤란자 긴급지원	긴급복지지원법 제2조

## 6. 결 론

- 불의의 화재를 입은 주민에게 각종 피해복구 및 구호제도를 안내·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발굴하고
- 찾아가는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화재피해주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민밀착형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.